

한국에서의 미국 CASA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 미국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

박 성 혜[†]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CASA(법원임명특별옹호자), 아동보호, 아동학대, 가정위탁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 : 박성혜,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서울시 강북구 4.19로 74

E-mail : elly9691@gmail.com

서 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아동방임 및 학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는 노력을 절실히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아동의 행복을 위협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가정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요보호상태의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복지의 대상으로 더욱 고려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요보호아동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하기 조차 어렵거나 더 큰 가족문제나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기가 쉽다(강란혜 외, 2004).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9,67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35.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25,878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18,700건이며 이 중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591건(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가 가정 내 친부모인 경우 15,048건(80.5%)이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2,173건(11.6%)인데 대리 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 587건(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53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아동들이 안전해야 할 가정뿐만 아

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을 위한 제한적 입법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의 개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의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으로, 2011년 전면 개정과 2014년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그리고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아동체벌은 훈육과 아동학대라는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쉽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학대로 확인되었을 때 그 아동을 가족과 분리시키는 것은 한국인의 가치관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 아동들 또한 정서적,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체벌 및 힘을 앞세운 훈육 방법으로 인해 아동의 도덕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안동현, 2014). 전반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 경험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김형모 외, 2007), 공격성, 비행, 주의집중 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안지연·손영은·남석인, 2014), 자살이나 자존감 저하, 정체성이나 대처능력의 문제,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정신적 문제(Bolger & Patterson, 2001), 학교 내 대인관계의 문제(김서현·임혜림·정익중, 2014)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후유증이 발생이 되었을 때 피해아동을 치유하고 이들의 욕구와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피해아동의 학대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이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도 주로 처벌 강화 위주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부족하다(이은주, 2014)고 볼 수 있다.

미국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2013년 679,000건으로 한국에서 보고된 아동학대 건수의 10배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류이근·임인택·임지선·최현준·하어영, 2016).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류이근 외(2016)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미국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건수가 390만 건이었고 이 중 679,000명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390만 아동들이 아동보호기관 등으로부터 학대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기보다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가정위탁제도와 같이 미국에서의 Foster care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 보존이 어려운 학대 및 방임 아동을 위한 Foster care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있는 방임 및 학대 아동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CASA 프로그램은 949년(National CASA Association, 2014)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들을 옹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그들을 임명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각 아동의 권리나 욕구가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에 있는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와 욕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정보를 판사들에게 제공하며, 그 아동과 청소년들이 좋은 영속적인 가정에 배치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 CASA 자원봉사자들은 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등이 자주 바뀌더라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법원 동행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성인 존재이다. 이러한 CASA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영구적인 결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ilkay와 Lee(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분리되어 CASA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CASA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아동들은 적절한 영구적인 계획(입양)에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있고 CASA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입양되거나 친부모들보다는 친척들과 재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A 개입의 효과는 아동의 최고의 관심에 대한 더 좋은 옹호를 지원하는 것(Litzelfelner, 2008; Poertner & Press, 1990), 법정에 객관적인 의견을 내는 것(Litzelfelner, 2008), 사례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Piraino, 1999), 적절한 거주지를 찾아서 배치해 주는 것(Weisz

& Thai, 2003),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Siegel et al., 2001), 성취감, 미래를 향한 낙관적인 태도, 사회적 기술, 지역 자원과 같은 보호요인을 개발하는 것(Waxman, Houston Proflet, & Sanchez, 2009)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CASA 프로그램은 엄선된 선발면 접과 전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자원봉사자가 법원 판사로부터 임명되어 학대피해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인 지원 및 법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ASA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을 알아보고,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검토하여 CASA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한국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있는 유사 아동보호서비스에 CASA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모델을 정립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미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보호체계

미국의 경우, 2013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건수가 390만 건이었고 이 중 679,000명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390만 아동들이 아동보호기관 등으로부터 학대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류이근 외, 2016). 이

러한 서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제정을 계기로 각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6년부터 미국의 아동보호제도(Child Protective Services)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각 주 별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념과 규정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아동을 구별하여 발 빠르게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유연수, 2016). 미국의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은 정부, 민간기관, NGO 등의 파트너십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한다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아동학대방지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다(김필두, 2016). 현재 미국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부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족실 내의 아동국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와 각 카운티에는 아동보호서비스과가 설치되어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주 정부와 카운티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의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조사-개입-종결의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신고는 아동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즉 교사, 의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거나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된다(유연수, 2016). 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그러한 사례를 목격한 경우 바로 경찰(911)에 신고하거나 각 주의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핫라인(Hot-Line), 혹은 무료전화(Toll free call) 등으로 신고함으로써 개입이 시작되며, 신고는 접수가 되면, 응급의 경우 24~48시간 내에,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4~10일 사이에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심각한 상해, 성학대나 사망의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경찰이나 법원과 함께 조사를 하게 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지속적 아동보호, 집중적 거택보호서비스 또는 배치 중에서 결정된다. 지속적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정도가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아동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의료보호나 주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부모 역시 보육서비스나 부모역할 보조원 등의 지지적 서비스, 아울러 가족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가족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집중적 거택보호 서비스의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지는 않지만 6개월 미만 기간 동안 아동복지사나 사회복지사가 매우 집중적인 가정방문을 하여 집중적으로 그 가족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배치는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친척을 통한 보호나, 가정위탁, 또는 이것도 여의치 못할 경우 그룹홈과 같은 시설보호를 하게 된다. 1980년 이후 아동에 대한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ning)’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이후,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원과 판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지도감독자(supervisor), 자문위원, 판사가 사례계획, 목표, 과업 그리고 아동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적절한 시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정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동이 영구가정을 찾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이 영구적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김필두, 2016). 만약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경우에 따라 부모의 친권이 영구히 박탈되고 입양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배치된다.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 원가정으로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되며, 해당 아동의 상태를 6개 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

CASA 프로그램의 배경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의 시작은 대대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한 판사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 David Soukup이라는 한 대법원판사가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제대로 아동의 상황이나 환경을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의 소송절차와 수천 명의 아동의 삶을 바꾸는 CASA 시민 자원봉사자를 고안해 냈다.¹⁾ 이에 대한 생각을 1977년 시애틀에서 파일럿(pilot) 프로그램으로 376건의 아동보호소송(dependency case)에서 498명의 아동을 위해 110명의 훈련된

1) 미국의 California CASA
(<http://www.californiacasa.org/>),

CASA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키게 되었다. 이후 1978년 전국주법원센터(the National Center of State Courts)에서 CASA프로그램을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최고의 시민참여의 예로서 선정하였고 New York시의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에서 지원받은 기금으로 전국 법원에 시애틀 CASA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전국 CASA 협회(the National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가 형성되었고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정에서 학대나 방임 피해아동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CASA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후 많은 국가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 CASA 협회는 미국 전역에서 Washington D.C.를 포함하여 949개의 CASA 프로그램을 대변하면서 기금조성, 대중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미디어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²⁾

National CASA Association의 Annual Report (2016)에 의하면 CASA는 현재 미국 전역의 938개의 CASA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와 방임된 280,316명의 아동들을 위해 봉사하는 86,995명의 자원봉사자들의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CASA의 지원을 받는 학대와 방임 피해아동이 12%가 증가하였고 CASA 자원봉사자 또한 13% 증가하였다. CASA 구조는 전국 CASA 협회(NCASAA - www.nationalcasa.org)와 주별 CASA 협회, 지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CASA는 리더십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CASA 네트워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훈련,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훈련 커리큘럼을

2) Wisconsin CASA Association
(<http://casa.huterra.com/>),

만든다. 또한 CASA 운동의 대중인식을 촉진하고 지역, 주 CASA 프로그램에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 CASA 협회는 각 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진 지역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 중심 자원봉사 훈련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발견된 최상의 실제를 공유함으로써 CASA 임무의 전략적인 향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전 주를 걸쳐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CASA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³⁾

CASA/GAL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CAS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CASA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신원확인과 면접 심사를 거쳐 엄격한 훈련을 받은 일반시민 봉사자라고 볼 수 있다. 원래 CASA 정식명칭은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또는 GAL(Gardian Ad Litem Vounteer)인데, 대부분의 주에서 CASA로 주로 사용된다. GAL은 후견인을 뜻하는 Guardian과 라틴어로 ‘소송을 위한’이라는 뜻의 ‘Ad Litem’이 결합된 용어로 ‘소송후견인’을 뜻한다(김경래, 2014). 각 주마다 CAS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모집자(recruiter)를 학교나 유관기관에 파견하여 CASA가 무엇인지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CASA와 연결되었던 CASA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CASA 자원봉사자로부터 자신이 얻었던 의미와 도움

3) CASA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 일부 내용은 CASA Training Manual(2010)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임.

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사람들은 엄격한 신원조회와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하며, 면접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CASA 아동을 만날 수 있는지, 가치관 등 다양한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면접심사가 통과되면, 판사 앞에서 CASA로서 다짐과 성실히 임할 것에 대해 선언을 하며, 이후 판사로부터 임명이 되어 CASA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즉 CASA 자원봉사자들은 학대당하고 방임된 아동의 최대의 이익과 관심을 옹호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판사는 아동이 CASA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 CASA를 임명하며 CASA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법원 또는 고등법원 공청회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청소년 피소송 중이거나 부모의 양육과 통제 권한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때 임명되기도 한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옹호하기 위해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계획을 세우며, CASA 아동 사례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사이의 협동적인 파트너십과 아동의 현재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아동의 보호체계가 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은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서 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위해 법원에 함께 가서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그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하는 40여 년 동안 지속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복지 체계 아래

있는 아동들을 위한 목소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은 법원이 아동친화적인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각 주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CASA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CASA 전담부서가 있으며 CASA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동복지체계에서 CASA 자원봉사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해를 제공하는 등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법원의 눈과 귀가 되도록 행동해야 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고하고,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에 대한 사려 깊은 권리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아동의 안전과 영속성, 복지인데, 안전(Safety)에 관해서는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의심되는 학대나 방임을 보고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영속성(Permanence)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나 다른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 새로운 가족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옹호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보고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복지(Well-being)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CASA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CASA 자원봉사자에게는 약속, 시간, 헌신, 용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대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최

상의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원칙은 법원이” 아동의 최고의 관심“에 있는 모든 결정 또는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때 순간의 결정에 적용된다(CASA Manual, 2010).

CASA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시사점

CASA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CASA 자원봉사자들과 그들의 슈퍼바이저들간의 연락과 의미 있는 실행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Litzelfelner, 2008)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Litzelfelner (2008)는 판사, 변호사, 아동복지사, 부모 총 742명을 대상으로 CASA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그룹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판사와 변호사들은 CASA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반면, 아동복지사와 부모들은 그들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사와 부모들은 CASA 자원봉사자들이 아동복지 체계에 있는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Calkins와 Millar(1999)의 연구에서는 CASA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은 아동들은 자원봉사자가 있는 아동들보다 8개월 이상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번 가정위탁을 옮기거나 가정위탁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성장기에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성을 심어줄 수 있다(Jonson-Reid & Barth, 2000)기 때문에 CASA 자원봉사자를 가진 아동들이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비율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해 채택된 CASA 자원봉사자들의 권고사항이 피해

학대아동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aliber Associates, 2004). Lawson과 Berrik(2013)의 연구에서도 몇 가지 CASA 프로그램의 이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점들은 혼들림 없는 응호, 독립적인 지지, 그리고 적은 담당건수를 통해 아동들과 더 가깝고 뜻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점이다. 또한 CASA 자원봉사자들은 법적 그리고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이해력과 아동들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Litzelfelner & Petr. 1997; Piraino, 1999; Weisz & Thai. 2003). 또한 그 아동들에 대한 깊은 이해력은 아동들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특히 정서 혹은 행동장애들을 중재하기도 한다(Connell, Katz, Saunders. & Tebes, 2006).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가정 위탁에 있는 것이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이끌 수 있고(James, Monn, Palinkas, & Leslie, 2008). 여러 번의 가정위탁 배치 또한 청소년기에 폭력적인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도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Jonson-Reid et al., 2000).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아동과 보냄으로써 아동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아동을 대신 응호할 수 있다(Litzelfelner & Petr. 1997; Piraino, 1999; Weisz & Thai. 2003). 다수의 가정위탁배치 혹은 가정위탁에 여러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영속성 불안정을 만들게 되고, 영속성 불안정이 정신병원을 이용하는 수와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ubin et al., 2004). 그 뜻은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의 취약성과 위험을 나타낸다. 미국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가정위탁 아이들 중 37%는 12개월에서 24개월을 가정위탁에서 지내고 67%는 24개월 이상을 가정위탁에서 보내거나 혹은 두

번 이상 가정위탁을 옮겼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3). 여러 번의 배치는 돌봐주는 사람(caregiver)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줄이지만 반면, 돌봐주는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가정 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있다고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번 반복된 배치와 이동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애정결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Gauthier, Fortin, & Jéliu, 2004). Farineau 와 McWey의 연구(2011)에 의하면 청소년과 돌봐주는 사람과의 친밀함이 올라가면 청소년이 비행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CASA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인해 학대 피해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많지만 CASA 개입과 가정외 보호에 머무는 기간의 관계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질적 연구로서 CASA 개입을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평가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Pikay & Lee, 2015).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적용해보는 가능성과 함께 미국에서의 CASA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보호체계

한국에서는 연일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재학대가 이루어져서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이르렀다. 가해자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폭력적 자녀 훈육에 대한 관대한 사회인식과 지역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허술한 아동보호체계가 미흡한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016년 한국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총 18,700건으로, 작년에 비해 35%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것은 2013년 울산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중 중복학대가 48,980건(48.0%),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6년에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사망아동사례는 50건이며 전체 사례의 0.3%를 차지하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유연수, 2016).

2015년에 발생한 인천 아동 탈출 사건으로 인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원혜숙, 2015).

현재 한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호체계는 최근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학대피해 아동 발견을 위한 발굴체계

를 구축하고, 발견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경찰, 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의료비 등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교육이나 부모교육, 대토론회 등 범정부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개인 가정 내의 훈육의 문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보호체계는 크게 아동학대 예방 유관 기관들 간의 공조체계와 아동학대 관련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공조체계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상호 사건을 통보하고 현장출동을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법의 제·개정 또한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201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금지행위의 명확화와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교육이 활성화되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동행 출동을 의무화하고,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로 취급하며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기준 강화,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한계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이후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유관기관이 확대되었다(김은정, 2016).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사건관리, 사후관리와 피해아동지원 모두를 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벽찬 현실 속에 있다. 아동학대가 재발생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관리와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대 피해 아동 지원과 예방 서비스는 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Early Home Visitation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대를 조기 발견하거나 가정과 분리된 아동이 가정위탁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정부에서 2014년 정부 종합대책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를 발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일시적인 방문이 얼마나 아동의 학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만나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CASA 프로그램 도입 적용 가능성

학대 피해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 존재 여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가능 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존재 여부,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손상 후유증 심각성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꿈동행서포터즈 등과 같은 유사프로그램 존재

꿈동행 서포터즈 사업은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법원동행 서비스이다.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 중에서 정서적지지 및 법원 동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과 서포터즈를 연결하여 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 정서적 지지를 하고, 법원 출두를 해야 할 경

우 법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 건강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꿈키움 멘토링, 뉴스읽기 멘토링,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CASA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 관계처럼 1:1 만나 그 아동의 정서적 지원과 법원동행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멘토링사업을 기반으로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법원동행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적극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CASA 프로그램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인 전문 교육과 훈련을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확대 가능성

한국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야 할 경우, 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일시쉼터에서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위탁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현재 가정위탁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년 가정위탁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호필요아동의 주 발생사유에서 학대가 33.6%인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학대로 인한 발생수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9.3%로 급속한 증가폭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 실태를 고려하여 원가정에

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이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 위탁을 확대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위탁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위탁에 대한 확대는 국가의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foster care(가정위탁)에 관한 홍보를 매일 지속적으로 광고에 내보내고 있으며, 가정위탁을 신청하는 가정에게도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가정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정위탁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가정위탁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특히 학대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강화한다면 한국에서도 가정위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위탁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학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도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으며, 이 아동들이 가정위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는 CASA와 같은 공적체계 속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증가

201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정책적인 노력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재학대나 죽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해 아동의 발견뿐만 아니라 치료,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까지 통합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니터링은 한 번의 가정방문으로 발견되기는 쉽지 않다. CASA 프로그램은 공적 체계 안에 민간이 함께 하여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벗어나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혹시 그 안에서 학대를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점검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서 아동학대 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식으로서의 CASA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손상 후유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가

아동기에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경험은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고(김평화·윤혜미, 2013, 재인용)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수정·정익중, 2013). 학대받은 아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발병 위험도 높다. 이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 비슷한 상황이나 자극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연관 증상으로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약물남용,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브릿지경제신문, 2016.3.21.일자 보도자료). 또한 학대 경험 아동은 취학 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높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자신의 자녀나 가족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조, 2012).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 또한 대부분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치료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이 그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보내짐으로써 받게 되는 재학대 위험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재신고 사례도 10% 이상이 되므로 피해아동이 원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ASA 자원봉사자가 연결이 된다면 재학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퇴직한 전문인력 등의 활용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은 65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업에서는 55세, 심지어 50세에 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국의 CASA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퇴직한 변호사, 간호사 등과 현직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지원한 전문직 사람들, 사회복지나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주로 학교나 법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CASA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자원봉사가 생활의

일부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조기퇴직하는 전문직 인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을 이와 같은 학대 피해아동의 응호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CASA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좀 더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자로서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81%에 임박한 현실은 대부분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교육의 문제로 보고 개입하지 않고 친권을 중시하는 한국문화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아동학대의 신고가 증가하였고 이는 아동, 청소년의 학대문제가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적절하게 정서적인 지지나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그 학대가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학대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조현증, 다중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전국

적으로 이들의 권리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의 도입은 이 시기에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CASA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마음, 상식, 결심, 인생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존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이나 기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추진 주체와 추진 기구 등을 정한 후 미국에서와 같이 중앙에 CASA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각 지역별로도 전담부서를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셋째, CASA 자원봉사자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들을 모집하는 인력과 훈련시키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CASA 자원봉사자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학대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적인 CASA 사례 검토 시간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수퍼비전을 줌으로써 CASA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 없는 과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을 위해 몇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미국의 CASA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도 작은 시도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아동들의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란혜 외 (2004).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김경래 (2014).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업체계 사례 -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91-115.
- 김서현, 임혜림, 정의중 (2014).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5-33.
- 김수정, 정의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은정 (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31-43.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9.
- 김필두 (201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에서 2016년11월7일 인출.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통권 45, 53-77.
-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2016).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시대의 창.
- 박순조 (2012). 아동이 경험한 학대가 공격성

- 에 미치는 영향: 인생 각본을 매개변인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2(2), 1-21.
- 보건복지부 (2015. 7. 31).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2017).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 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브릿지경제신문 (2016. 3. 21). 보도자료.
- 안동현 (2014). 체별: 훈육인가 폭력/학대인가. 2014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국제아동권리포럼, 41-51.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원혜욱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18(4), 31-60.
- 유연수 (2016).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미국의 사회 감시망.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nypi.re.kr>에서 2016년11월7일 인출.
- 이은주 (2014).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192, 16-21.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13). *Child welfare outcome 2006-2011*. Retrieved from http://www.acf.hhs.gov/sites/default/files/cb/cwo08_11.pdf.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568.
- Caliber Associates (2004). *National CASA Association Evaluation Project*. Caliber Associates; Fairfax, Virginia.
- Calkins, C., & Millar, M. (1999). The Effectiveness of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to Assist in Permanency Planning.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6 (1), 37-45.
- Connell, C. M., Katz, K. H., Saunders, L., & Tebes, J. K. (2006). Leaving foster care-the influence of child and case characteristics on foster care exit r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780-798.
- Farineau, H. M., & McWey, 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963-968.
- Gauthier, Y., Fortin, G., & Jéliu, G. (2004). Clinical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in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in foster care: The importance of continuity of car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 379-396.
- James, S., Monn, A. R., Palinkas, L. A., & Leslie, L. K. (2008). Maintaining sibling relationships for children in foster and adoptive placem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90-106.
- Jonson-Reid, M., & Barth, R. P. (2000). From placement to prison: The path to adolescent incarceration from child welfare supervised foster or group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 493-516.
- Lawson, J., & Berrick, J. D. (2013). Establishing CASA as an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10, 321-337.
- Litzelfelner, P. (2000). The effectiveness of CASAs in achieving positive outcomes for children. *Child Welfare*, 79, 179-193.
- Litzelfelner, P. (2008). Consumer satisfaction with

- CASAs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pp. 173-186.
- Litzelfelner, P., & Petr, C. G. (1997). Case advocacy in child welfare. *Social Work*, 42, 392-402.
- National CASA Association (2014). Annual Report.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www.casaforchildren.org.
- Pilkay, S. & Lee, S. (2015). Effects of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Intervention on Permanency Outcomes of Children in Foster Car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41, 445-453.
- Piraino, M. S. (1999). Lay representation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Variations of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programs and their relationship to quality advocacy. *Journal of the Center for Children and the Courts*, 1, 63-71.
- Poertner, J., & Press, A. (1990). Who best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child in court? *Child Welfare*, 69, 537-549.
- Rubin, D. M., Alessandrini, E. A., Feudtner, C., Mandell, D. S., Localio, A. R., & Hadley, T. (2004). Placement stability and mental health costs for children in foster care. *Pediatrics*, 113, 1336-1341.
- Siegel, G. C., Halemba, G. J., Gunn, R. D., Zawacki, S., Bozynski, M., & Black, M. S. (2001). *Arizona CASA Effectiveness Study*.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 Waxman, H. C., Houston, W. R., Proflet, S. M., & Sanchez, B. (2009). The long-term effects of the Houston Child Advocates, Inc., program on children and family outcomes. *Child Welfare*, 88, 25-48.
- Weisz, V., & Thai, N. (2003). The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Program: Bringing information to child abuse & neglect cases. *Child Maltreatment*, 8, 204-210.

논문 투고일 : 2018. 06. 01

1차 심사일 : 2018. 06. 04

제재 확정일 : 2018. 08. 27

**S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US CASA Program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child protection service
between USA and Korea**

Sunghae Park

Director of Gangbuk-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Our society has an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respect and protect the character of the child. Recently, however, Korean society has been suffering from child abuse and abuse that is pouring out every day. In order to protect these childre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 fundamentally child-friendly. The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volunteer program, which is being held in the United States with such a concern, is a continuing program of court attendance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 Korea, however, there are many similar programs such as mentoring projects, dream co-supporters project similar to the CASA program in various organizations of the region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increases the involvement of the public system in child abuse. There is also an increase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active monitoring to prevent recurrence of child abuse. These changes in the Korean society should be actively reviewed by the US CASA program and settled as a national project in the Korean society so that the system of protecting the safety and rights of the victims of child abuse will be established. It is anticipated to be a way to prevent social problems from occurring in advance.

Key words : CASA,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foster care